



“시설물의 보수·보강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킵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수신 시설물유지관리업체 대표

제목 2021년도 기성실적 심사결과 확인 안내

1. 귀 업체가 우리 협회에 제출한 2021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신고 내역을 시공능력평가 관련 지침 등에 의거 처리한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결과 조회요령

실적신고 프로그램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처리결과 조회’ 클릭

→ ‘건설공사 실적내역’ 에서 심사 결과 확인

※ ‘건설공사 실적내역’ 이외 항목(재무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은 아직 심사 대기중이며 심사결과 공시 전에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나. 심사결과 불인정 또는 조정된 실적에 대해 재검토 및 보완을 원하는 업체는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어 오는 ‘22.05.30.(월)까지 실적관련 서류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확정된 2021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성실적은 오는 ‘22.06.02.(목) 공시되며, 우리 협회 홈페이지 인터넷증명서 발급을 통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 장 황



담당 길병준

팀장 최은숙

본부장 오학식

회장

협조자

시행 경영지원본부 - 제291호(2022.05.24.)

접수

우 07071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7층

<http://www.fma.or.kr>

전화 02-3284-1157

전송 02-3284-1228

bjkil0304@fma.or.kr

불인정·조정 사유별 소명요령

불인정 사유	소 명 요 령
공사내역 확인요망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수공사아님	세부공종이 포함된 공사내역서 제출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에 해당되는 공사로 확인될 경우 실적인정 처리하며 건설공사가 아니거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실적인정 불가
○ 시설물의 신축공사 실적은 <u>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영역에서 제외됨으로 실적인정 불가.</u> ○ 안전진단용역, 내진성능평가용역, 설계용역, 청소용역, 단순철거용역, 폐기물처리비용, 물품구매납품 등의 매출은 건설공사가 아님으로 실적에서 제외됨.	
실적증명서 없음 또는 실적증명서 있으나 발주자 미확인	발주자(원도급자)가 확인(직인 날인)한 실적증명서원본 제출 - 발주기관의 기관장 직인이 아닌 담당공무원의 직인, 발주자의 직인이 아닌 서명으로 대체된 증명서는 인정불가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아님 또는 증명서 상 업종 및 등록번호 확인요망	-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건산법 별지19호] 이외의 서식으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업종 및 공종 확인이 불가하여 실적인정 처리 불가 - 기성실적 증명서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이외의 업종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수행한 공사로 볼 수 없어 실적인정 처리 불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직인,간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매출 없음	- 실적증명사업자와 매출계산서발행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 2021년도 준공 완료하였으나 신고한 전체매출이 2022년도 1/4 분기에 발생한 경우에는 2022년도 1/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전문업종 간 하도급 발주자 서면승낙서 미제출	발주자가 확인한 전문업종 간 하도급 서면승낙서 사본 제출 ※ 전문업종 간 하도급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확인한 서면승낙서 미제출시 원·하도급 실적 모두 불인정 처리됨. ※ 전문업종 하도급 서면승낙서를 제출한 원도급 업체는 하도급 준 금액의 1/2만큼 감액되어 실적 인정되므로 기성금액 확인 요망.
전문업종 간 하도급내역 미신고	
원도급사에서 전문업종 간 하도급내역 미신고	